##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 급여기준

(고시 2019-28호와 공고 2020-340호를 참고로 작성함. 작성일: 2021-07-13)

1.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, ICD)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.

- 다음 -

- 가.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
- 나.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
- 다.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 되지 않는 경우
- 라.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
- 마.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
  - 1)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
  - 2)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
- 바. 심부전(Heart Failure)
  - 1)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

- 아래 -

- 가) 심구혈률(Ejection Fraction, EF) ≤ 30%
- 나) 심구혈률(EF) 31~35%로 NYHA class II, III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
- 다) 심구혈률(EF) ≤ 40%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
- 2)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,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(EF) ≤ 35%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

- 사.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(Brugada syndrome)환자에서 충분한 평가(evaluation)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
- 아. 비후성 심근병증
  - 1) 아래의 급성 심장사(Sudden Cardiac Death)의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

- 아래 -

- 가) 좌심실 벽두께 30 mm 이상(단, 16세 미만 환자는 Z-score≥6을 포함)
- 나)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
- 다)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
- 2) 아래의 급성 심장사(Sudden Cardiac Death)의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(Non-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, NSVT)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 혈압반응(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)이 있는 경우

- 아래 -

- 가) 30세 미만
- 나)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
- 다) 좌심실유출로 폐색
- 라) 과거의 실신
- 마) 좌심실류
- 바) 좌심실구혈율 50%미만
- 자.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(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)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
- 차. 팔로네징후(Tetralogy of Fallot, TOF)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

- 아래 -

- 1) 좌심실 기능 저하
- 2) 비지속성 심실빈맥
- 3) QRS 간격>180ms

- 4)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
- 카.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(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, CPVT) 환자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 맥을 보이는 경우
- 타. 심장 사르코이드증(Cardiac sarcoidosis), 거대세포심근염(Giant cell myocarditis), 샤가스 병(Chagas disease)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목적인 경우
- 파. 상기 가.~타.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(ICD)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 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.
- 2. 상기 1.의 급여기준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.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 정함.
- 3.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 치료의 적절한 약물치료에 대한 적용기준 (공고 2020-340호)
- \*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의 '심부전에서 적절한 약물치료'에는 레닌-앤지오텐신계 차단제와 베타차단제가 모두 포함하여야 함. 다만, 환자상태가 상기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임상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